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실 밑에 설치한 정보화기획팀 및 개발협력지원팀의 존속기간을 2020년 9월 22일에서 2022년 9월 22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사무를 직업능력정책국 하부조직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분장사무에 반영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및 직업능력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원이 발생한 고용노동부의 운전직렬 정원 1명(7급 1명)을 행정·통계·직업상담·공업·보건·시설·전산직렬 정원 1명(7급 1명)으로, 행정·통계·직업상담·전산직렬 정원 1명(8급 1명)을 운전직렬(8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7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도·점검(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6조의3제8항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일학습병행과정 인정에 관한 사항

13.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14.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도·점검

제7조제10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운영 및 관리

제14조제3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별표 5,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8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0년 9월 22일”을 “2022년 9월 22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직업능력정책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의3(직업능력정책국) ① -- ----- -----.
⑦ 인적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1. 삭제	1. ---
21. <u>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도·점검</u>	21. <u>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도·점검(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u>
22. ~ 24. (생략)	22. ~ 24. (현행과 같음)
⑧ 일학습병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
1. 일학습병행제 정책·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1. ----- -----
<u><신 설></u>	12. <u>일학습병행과정 인정에 관한 사항</u>
<u><신 설></u>	13. <u>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u>
<u><신 설></u>	14. <u>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도·점검</u>
제7조(노동정책실) ① 노동정책실장·노사협력정책관·근로기준	제7조(노동정책실) ① ----- -----

정책관 및 공공노사정책관은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 보한다.	----- ----- -----.
⑩ 고용차별개선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⑩ ----- -----.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차별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1. ----- ----- -----
<신 설>	10. <u>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운 영 및 관리</u>
⑪·⑫ (생 략)	⑪·⑫ (현행과 같음)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고용센터 및 근로개선지도센 터를 포함한다)는 별표 4와 같 다. 다만,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고 용노동청장은 근로개선지도1과 에 제8항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 ----- ----- ----- --. ----- ----- ----- ----- ----- ----- ---.
③ 고용센터 소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로 한정한다.	③ ----- -----. ----- -----.
1. 자체 고용대책 수립	1. -----

<신 설>	28.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 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 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④ ~ ⑫ (생 략)	④ ~ ⑫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5]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직 업상담주사보·공업주사보· 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34</u>	<u>35</u>	+1
·	·	·	
·	·	·	
운전주사보	<u>1</u>	<삭제>	-1
·	·	·	
·	·	·	
행정서기·통계서기·직업상 담서기 또는 전산서기	<u>4</u>	<u>3</u>	-1
·	·	·	
·	·	·	
운전서기	<u>1</u>	<u>2</u>	+1
·	·	·	
·	·	·	

[별표 6]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직 업상담주사보·공업주사보· 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38</u>	<u>39</u>	+1
·	·	·	
·	·	·	
운전주사보	<u>1</u>	<삭제>	-1
·	·	·	
·	·	·	
행정서기·통계서기·직업상 담서기 또는 전산서기	<u>4</u>	<u>3</u>	-1
·	·	·	
·	·	·	
운전서기	<u>1</u>	<u>2</u>	+1
·	·	·	
·	·	·	